

<토론회>

## 세계여성행진을 통해 본 세계화반대 국제연대 방향과 전망

- ▶ 강연 - 빈곤과 폭력에 맞선 세계여성행진 (말레아 무네스, 세계여성행진 아시아 코디네이터, 필리핀 WEDPRO 활동가)

### ▶ 발제

- 여성운동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 평가 및 페미니즘적 시각에 입각한 국제 연대운동을 위한 시론(정주연, 세계화반대여성연대)
-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반세계화 운동 평가 및 전망(류미경, WTO반대국민행동)
- 세계여성운동의 성주류화 조류와 필리핀 여성들의 현실(말레아 무네아)

일시 : 2005년 7월 1일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조병두국제홀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 **SHARING ON THE WORLD MARCH OF WOMEN**

**Marlea P. Munoz  
WEDPRO/ Kilos Kabaro 2  
2005 July 01**

### **HERSTORY**

WMW started in 1995 as informal talks on possible international actions after a highly successful 10 day march of 850 women from Quebec on economic justice issues. (They called it the Bread & Roses March which covered 20km/day and ended in front of three different buildings of parliament where the marchers were met by 15,000 women. Five out of their eight demands were achieved.) If 10 different countries in three regions of the world would agree, then they would hold international actions. But as it happened, not only ten but 163 countries joined coming from five, and not just three regions of the world. This is because there are two universal realities : feminization of poverty & VAW.

The first international meeting held in Montreal in 1988 was attended by 140 delegates from 65 countries. This was when the 17 world demands were adopted and an 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was organized. In 2000, grassroots based national coordinating bodies were formed and various activities happened: on March 8, an international signature campaign garnered over 5M signatures in a variety of forms; on Oct 15 a rally in the US was attended by women from 100 different countries ; on Oct 16 delegates met with the president of the WB & the director of the IMF with the WMW setting the date, time & agenda of these meetings. The following day, 100 women where inside the UN while 10,000 more were outside the building. It was then when an Afghanistan woman removed her "burka" and said that for speaking in public without her husband, she could be lashed, and for removing her "burka" she could be killed.

By Oct. 18 during the 2<sup>nd</sup> international meeting, 100 countries were represented and it was clear that the WMW had become a movement. The 3<sup>rd</sup> international meeting in October 2001 officially reaffirmed the March as an on-going movement ; goals were adopted and peace was included in the issues to work on. Up to this time, the structure of the Quebec Feminist Movement which stated all this was being used. But by the 4<sup>th</sup> international meeting which was held in New Delhi, a separate structure was already adopted. An international committee with two representatives from each of the five regions ( Americas, Europe, Middle East, Asia-Oceania and the Great Lakes) ; an international secretariat composed of five women ; working groups to take care of education within the WMW: one on VAW, another for lesbian rights and a third on economic alternatives; and collectives to take care of political representation: one on peace & demilitarization, another on global actions & alliances and a third on communication.

During the 2003 meeting in New Delhi, India held on March 18-22, the strategic plan for 2005 was firmed up composed of three major outputs: the Global Charter for Humanity,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relay march, and the creation of an immense quilt. Thirty five (35) countries were present coming from the five regions. There were 118 countries participating in 2003, 78 wanted to come and out of this, 35 were able to send delegates. Other countries had no contact with the WMW since 2001. One insight shared by the Philippine delegate was that the Movement can be an effective mechanism for achieving gains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and VAW, IF CAMPAIGN ARE WELL-ORGANIZED. At the very least, the Movement can serve as a good venue for circulating

each organization's/ country's advocacy, expanding one's Movement, learning from each other's experiences, and fostering sisterhood.

With the aim of having the relay in 2005, the Global Charter for Humanity was adopted on December 10, 2004,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Twenty nine (29) countries with 3 countries abstained considering that they have actually dealt with abortion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This Charter has become another major document of the Movement in addition to the 17 world demands.

### **VISION**

The vision therefore of the Movement is to build another world that is ecologically, economically, socially, politically, and culturally support humanity.

The value added in the WMW is it's clear objective of being a movement for women's liberation by way of questioning the roots of exploitation and oppression. It denounces capitalism and patriarchy. Through the years, there has been increasing common comprehension of the world we are building. We have allies in the anti-globalization movements and other social movements. We are action-oriented with mass/ collective action perspectives. We continue to organize and build movements among grassroots women.

In terms of mechanisms, the Movement has an international committee, a secretariat, working groups, collectives, and national coordinating bodies.

### **CHALLENGES**

These herstorical and relational aspects of the Movement have brought a continuing motivation among participating groups to continue and make changes in the lives of women. Along with these, the Movement has reflected on some challenges.

#### **Operations**

- In terms of operations, the Movement need to work further towards sustained funding. It has been too political, too lobby oriented.
- Decentralizing work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making the collectives & working groups functional & having different NCB responsible for different actions in 2005.
- Working groups and collectives need to be more coordinated and function more at similar levels
- National & international linking
- Language barriers
- Lack of media exposure

#### **Discourse**

- Need to continue education and sharing of comprehension and action points on lesbian rights, abortion, contraception,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of women
- Sustain and continue to develop questions to sharpen further understanding of women's issues at changing contexts

#### **References:**

Jing Geaga, SARILAYA/Kilos Kabaro2  
World March of Women documents

## 여성운동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 평가 및 페미니즘적 시각에 입각한 국제연대 운동을 위한 시론<sup>1)</sup>

정주연(세계화 반대 여성연대)

성주류화 전략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왔던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의제로서 여성의 시민권을 회복해내는 중요한 전략이다. 이는 90년대 중후반 여성운동 및 한국 사회 여성정책을 아우르는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다. 성주류화 전략을 내놓은 UN 주도하에 개최된 세계여성회의는 여성의 권리와 지위에 관한 보다 세분화되고 새로운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 및 정책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 정부도 1984년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남녀평등 실현을 국가의 중요한 의무로 법 영역에 영향을 주며 여성관련 입법 등을 활발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당시는 시대적 상황에 의해 사회운동들은 국내적 정치상황에 관한 투쟁에 몰두할 시점이었으므로 국제적인 수준의 문제의식이나 운동의 방향의 공유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국제연대를 통한 운동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다.

사회주의권 몰락이후 이념적인 방향에 처해져 있던 한국의 여성운동은 당시 활발히 진행되어오던 세계여성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운동의 국제적인 차원의 공유와 연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당시 새로운 운동방향의 모색과정에서 여성운동가들은 UN이 개최한 일련의 세계여성회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UN의 역할, UN의 선언과 각종 협약이 각국의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심감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신혜수, 1999)”라는 여성단체 대표의 말에서처럼 여성운동에서 국제연대운동이 1995년을 계기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1995년 북경여성회의를 기점으로 이 회의에서 제기된 ‘성주류화’ 접근법이 새로운 운동의 패러다임으로 한국 여성운동의 방향에 핵심적인 의제로 자리하게 된다. 실제로 여연의 실제 활동은 이 이념과 전략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그결과 90년대 여성운동은 성주류화를 위한 법제화, 제도화에 주력하는 방향을 나아가게 된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성들의 지위를 바꾸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가와의 파트너쉽 관계를 통한 정책화 과정을 걸으며 성주류화의 의미는 굴절되어, 여성들간의 계급 계층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공간 내에서 자본의 편에 서는 국가와 그 정책에 의해 삶의 질이 하락하고 그동안 쟁취한 평등권이 후퇴되는 상황 속에 놓인 여성의 문제를 여성운동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근거를 놓치게 했다.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는 여성운동의 국제연대에서 국제회의를 중심으로 ‘이념’을 수입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국제연대운동의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제주의의 가능성을 여성운동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 I. 90년대 ‘진보적’ 여성운동<sup>2)</sup>의 방향 : 성주류화 전략과 전술의 전면적 등장

- 1) 이 발제문은 지난 2004년 6월 30일 가졌던 토론회에서 정주연, 엄혜진이 공동 발제했던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2) ‘진보적’ 여성운동에서 진보적이라는 말에 따옴표를 치는 것은 오늘날의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같은 조직이 80년대에서는 사회운동에서 있어서도 진보성을 담지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기존의 운동과는 달리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고 여성억압적 국가에 저항했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조직으로 구분짓을 수 있지만, 오늘날 이들이 점차 제도화되는 과정을 걸으며 ‘진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1980년대는 한국의 민주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민중투쟁의 시기였다. 이 시기는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박정희 정권 시기 새마을부녀회와 같은 관주도의 조직과는 별도로 70년대 노동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성 대중들과 여성 지식인들로 구성된 '진보적'인 여성단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며 여성운동은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된다. 당시 여성운동은 주로 두 개의 입장을 표방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하나는 남녀 차별과 같은 가부장제 성차별문화의 개혁과 이를 통해 남녀 모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민주·통일 사회 건설에 주력하는 그룹, 또 하나는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밝히면서 '여성의 다른'이 반영된 민주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는 그룹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여성운동을 특징지어 본다면, 결과적으로 성, 계급, 국가의 엇물림에 의해 빚어지는 여성 이해의 다양성을 활동에 반영하기 보다는 그 다양한 이해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운동을 펼쳐갔다. 이는 당시 여성운동이 스스로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기여와 시대상황에 대한 책무성에 따라 여성운동의 활동내용을 민족, 민주, 민중의 과제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의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문제를 기층여성에 맞추어 생각했으며, 비록 우리 사회에 내재된 가부장제 질서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비판은 부재했지만, 독점자본·군사독재에 저항하는 반국가 투쟁에 합류하며 궁극적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자본주의적 국가를 비판하고 저항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또한 한계적인 것으로는 당시 여성운동이 성(sexuality)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식이 거의 부재했던 상황이라 '여성의 권리'에 대한 투쟁도 평등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의 평등 개념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남성적 기준에 도달하는 평등 개념이 주요한 것이었다.

90년대 들어 여성운동은 변화의 길을 걷게 된다. 민주화·통일 등의 사회변혁 이슈에 통합되어야 했던 80년대의 시대적 정황이 있었다고는 하나, 여성의 고전적 역할을 강요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의 관점을 놓아버린 80년대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한국 사회 가부장제적 권위주의, 획일주의, 성차별 주의로 시선을 돌리려는 노력이 여성운동 내에서 일어난 것이다. 90년대 초반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특징을 정리해보면 정치적 입장이 다양한 여러 여성운동 단위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연대하게 된 것이다. 이는 또한 국가와 민족을 넘어 '같은 가부장제 억압체험'을 당하고 있는 '같은 문제를 가진 여성'을 사회적 존재화하고 여성의 문제를 정치화했다.(서미라, 2002) 이는 80년대 여성운동이 국가를 투쟁과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90년대에 와서는 국가가 비록 가부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일반의 권리를 획득해내는데 있어서 국가를 여성권리를 위한 태협과 협상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93년, 오랜 군사정권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간정권이 등장하며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회적·정치적으로 한국사회는 형식적이나마 많은 부분 민주적으로 바뀌어갔다. 이를 기점으로 군부독재에 저항한 변혁운동의 침몰과 더불어 한국사회는 시민사회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며 시민단체가 등장하고 시민적 권리와 그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개혁의 과제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진영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시민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sup>3)</sup>'(강남식, 윤정숙, 남인순, 1999)임을 분명히 하고 점차 저항운동적 성격보다는 정책개입방식으로 전환하여 간다.<sup>4)</sup> 90년대 중반이후 여성운동은 자신의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재개념화하며 자유주의적 평등의 실현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외부적 요인으로는 지구적 차원의 국제정치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2차대전 이후 UN을 중심

3) 시민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이 자신들의 실천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러하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시민적 권리를 확장시켜주는 참여민주주의 사회,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복지사회,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완전고용사회와 평등고용이 보장되는 사회,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사회, 전쟁이 없고 한 민족이 어우러져가는 평화통일사회, 자연과 상행하면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 여성과 사회적인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사회, 이러한 사회를 지향한 실천이다."(남인순, "민주화 확대 이후의 진보적 여성운동의 자리잡기; 여성연합의 활동을 중심으로", 1999)

4) 이러한 과제 설정에서 여성연합의 운동은 시민운동과의 변별성을 찾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여성연합은 진보성의 문제제기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여연에서는 자신들이 보수적 여성운동이나 시민운동과 다른 점을 과거 민주화운동의 경력을 들며, 현재의 변화는 군사독재의 타도 이후 참여민주주의로의 전환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남인순, "민주화 확대 이후 진보적 여성운동의 자리잡기", 1999)

으로 한 국제정치의 힘이 강화되며, 이것이 여성정책 및 여성운동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UN이 주도하는 세계여성회의 제4차 회의가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이후 세계여성운동계는 “성주류화(mainstreaming)”전략을 행동강령의 중심적 이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러한 국제적 동향이 한국의 여성정책 및 여성운동에 적지 않는 영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주류화 전략은 남성중심적 사회의 전면적 변화를 촉구하기 보다는 그 안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여성운동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성주류화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한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여성운동진영은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국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동의 형식을 변화시킨다. 현재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한 주류화 전략에 입각한 운동은 여성적 입장의 관철을 통한 성주류화가 아니라 여성의 정치·경제·사회 영역으로의 보다 많은 통합과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 여성운동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성역할·성불평등에 대해서 민감해진 반면, 국가의 자본주의적 성향에 대해서는 감성이 무뎌졌다는데 있다. 이 시기 여성운동의 중요 내용은 공적영역에서 남녀가 차별되고 있기 때문에 평등에 입각한 권리가 여성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성차별의 사회문화적 조건 때문에 평등할 수 없는 부분을 한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 사적영역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이나 괴롭힘, 불평등을 정치화시키고 그것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한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국가에 대한 여성운동의 인식이 80년대의 적대적 관점에서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국가페미니즘<sup>5)</sup>으로의 전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것은 여성운동의 이슈가 진보성과 급진성을 상실해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자본의 세계화에 전위기구인 세계은행이 “여성에 대한 투자는 사회정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발전전략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각국에 여성인력활용 확대를 권장하자, DJ 정권으로부터 현재의 노무현 정권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용전략을 취하고 있다. 여성운동단체들도 이러한 정권의 속셈에 저항하기보다는 성주류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과거 여성운동에 있어서의 계급성과 반자본주의적 성향은 대부분 탈각시킨다. 성주류화 전략에 따른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임직 등의 불안정 노동의 형태이고, 여성고학력 인력의 실업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여성친화적”이며 이전의 어떤 정권보다 성평등한 관점을 수립하고 있다는 평가와 기대를 받고 있다. 이미 여성연합을 비롯한 한국사회 주류 여성운동 단체들은 견제와 저항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폐기하고 이 정권들과 연대 및 협력하는 파트너쉽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sup>6)</sup>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빈곤화를 이야기 하지만 여성 빈곤화의 최대 주범인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에 대해서는 날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로서 해결하려는 입장은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80년대 이들의 운동의 뿌리를 이루었던 민민운동적 사회인식이 현재의 여성운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 II. 한국 여성운동의 성주류화 전략의 문제점

- 
- 5) 국가 페미니즘(state feminism)은 여성운동이 출산권, 성폭력, 육아, 기회평등과 같은 여성의 권리를 쟁점으로 하여 정당, 정부, 다양한 공적기관 또는 여성정책 담당 국가기구에 참여하여 페미니즘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국가 페미니스트라고 부른다.(김경희, 1999에서 재인용)
- 6) 여성일반의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운동은 정책적, 법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문민정부라는 허울을 쓴 김영삼 정부의 등장 이후에는 보다 급속히 국가와의 일정한 타협과 협상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더욱이 김대중 정부로 이행하며 사회개혁적인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시민운동이 정부와 개혁의 파트너쉽을 형성해가자 시민운동의 정체성에 기반한 여성운동진영은 전체 개혁적 이슈에 밀려 97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성이 일자리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났으나 여성차별적인 상황을 여성노동권확보투쟁과 같은 자본의 편에 서는 국가와 정면돌파를 시도하기보다는 여성들에게 시혜적인 혜택이 되는 사업 예를 들면 여성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보나 여성실직가장에 대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갔다. 이것은 그간의 성과를 이어가고 시민적 참여 공간이 확보된 정치상황 속에서 성주류화라는 제도적·정책적 차원의 성과를 위한 타협이라 할 수 있다.

## 1. 성주류화 전략의 함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발전 전략으로 채택된 북경여성 행동강령의 중심 개념이다. 북경여성행동강령은 '성주류화'라는 개념하에 세부화된 12개의 분야별 이행 과제를 담고 있다. 지난 2005년 뉴욕에서는 유엔 여성특별총회를 개최하여 북경여성행동강령에 대한 각국의 이행 내용을 평가하는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1995년으로부터 10년째 되는 해의 회의로서 일명 '베이징+10' 회의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이 회의에 각국 정부는 여성 정책의 법제도적, 정책적인 변화와 성과에 관한 지난 10년 간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평가는 각국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대륙별 정부최고급 평가회의를 거쳤고, 여성 NGO 단체들은 각국 평가는 물론 대륙별 회의에도 대응하여, 세계화, 테러리즘, 인신매매 등 새로이 당면한 문제를 중심으로 여성 NGO의 요구를 제출하도록 정부간 회의에 압력을 행사했다.

2005년 6월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여성행동강령 이행 평가를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된 것 역시 이러한 일정과 맞닿아 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성 평등 관련 법·제도화 과정에 여성 NGO의 역할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NGO 활동에 대한 성과와 평가가 혼재"되어 있다는 주최측의 설명처럼 주류화 전략 자체가 정부와의 파트너쉽 관계를 기본으로 한 로비활동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성주류화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실행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젠더 이슈를 고려하는 것 이기 때문에 여성운동의 제도적인 개입과 압력 행사는 필연적인 수순이기도 하다.

이 심포지엄을 주최한 여연은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여성폭력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함께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확대, 성인지 예산정책의 수립, 그리고 최근의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시장자유화의 급속화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확대 및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과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여성단체연합, 2004)고 평가했다.

그런데 성주류화 전략의 형성 배경과 현재적인 함의를 고려해 봤을 때,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평가가 분야별 성과와 한계에 기초해서 점수매기식 평가로 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제도적인 영역에의 전략적 개입이 현재 한국 여성운동 흐름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체적인 방향과 운동의 내용을 규정짓고 있으며, 성주류화 전략의 신자유주의적 특질이 서서히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성주류화 전략은 1985년 제3차 나이로비 유엔여성대회 이후 등장한 젠더와 발전(Gender and Development) 접근법을 보완하는 전략으로 1995년 베이징 대회를 정점으로 모든 국제기구들과 참가 정부들이 공식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관점이다. 이는 1975년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된 제1차 유엔여성대회에서 개발에의 여성 참여(Women in Development)라는 단순한 시장 진출 전략과는 구별되는데, WID의 경우 재생산자가 아닌 생산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주목하여 개발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1970년대 보즈럽(E. Boserup) 등 신인류학자들을 중심으로 제3세계의 개발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오히려 여성의 소외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평가 속에서 도출된 WID 접근은 여성을 전통적인 성역할에 고정시키고 복지적인 접근을 취했던 이전의 전략과는 구별되는 것이었지만, 불평등한 시장구조와 성별화된 재생산의 문제에 대해 매우 무력한 접근이었다. 반면 GAD의 경우는 이러한 WID 접근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젠더 관계 자체의 재편을 지향하면서 재생산을 도외시했던 발전 정책의 극복을 주창하며 출현했다. 성주류화 전략은 주류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GAD 접근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전략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생산 노동에 대한 강조 등 GAD 접근이 가지고 있는 폐미니즘적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인적자본론은 여성의 재생산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이론적 근거를 형성하기에는 경험적, 분석적 취약함을 지니고 있다. 즉 GAD 접근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공인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90년대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개발기구들이 주목한 인적자본론이 자리잡고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한 재생산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인적 자원의 재생산과 투자의 중요성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투자' 옹호론은 세계은행을 위시하여 국제발전기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세계은행은 1995년 베이징에

서 개최된 제4차 UN 세계여성회의를 전후하여 사회적 발전의 전제조건으로서 젠더 평등을 촉진할 것을 주장하는 일련의 보고서들을 제출한다.(권현정, 2002) 그런데 인적자본론이라 함은 인적 요인을 하나의 생산 투입 요소로 바라보고, 기구내 (재)생산의 문제를 시장과 동일한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젠더불평등의 문제를 시장의 생산성 증대와 연동시킴으로써, 결국은 여성에게 재생산 노동과 생산 노동의 동시적 효율성을 부과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성주류화 전략은 사실 신자유주의의 기획과 호응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금융의 세계화를 매개로 한 노동시장 유연화, 케인즈주의적 국가 규제의 철폐, 사유화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추상화된 개인들이 시장에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 마련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경쟁의 가속화와 그를 통한 다양한 사회의 다양한 계급 계층에 대한 분할 및 배제 전략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 여성의 빈곤화, 여성의 양극화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결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심적인 전략으로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성주류화 전략에 입각한 '양성평등'이란 곧 남성적 권력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없이, 그 체계 안에 좀더 많은 수의 여성을 승차시키는 전략으로 추락할 가능성성이 높다.

물론 성주류화 전략을 단지 국가나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의 일환으로만 환원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성주류화 전략의 탄생은 70년대 이후 세계 여성운동의 꾸준한 성장을 통해 공급받은 젠더적 시각에 큰 부분을 빚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운동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성주류화는 국가와 자본의 전략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여성의원수가 많아지는 것 자체만으로 가부장적 법, 제도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의 입법사, 법제도 변화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성주류화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된 데에는 여성운동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저항의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럼으로 주류화 전략을 평가함에 비제도적 장에서 펼쳐진 다양한 운동과 실천들의 정치적 함의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의 주류화 전략을 평가하고자 하는 까닭은 이러한 주류화 전략이 현실적인 함의를 점차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며, 정책적인 영역을 뛰어넘어 한국 여성운동 전반에 걸쳐 운동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즉 "여성대상만의 정책을 넘어 남성을 변화시키고 남녀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포함함으로 성주류화 전략의 철학과 기조"에 입각한 여성운동의 성과가 신자유주의적 추동력에 의한 떡고물 및 비극적인 후과와는 구별되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 베이징 +10은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전세계 여성운동의 평가를 모아내고 대안적인 노력을 모색한 중요한 계기로서 작동했다. 비록 이 회의 이후 각국 NGO들은 여성의 권리가 세계여성회의가 최초로 열렸던 30년전에 비해 나아진 곳도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나, 아직도 많은 국가가 성차별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은 여전히 2등 시민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도 '국가'라는 범주의 가부장적 성향,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 과정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신자유주의와 쌍을 이루는 사회·문화적 신보수주의 경향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은 나오지 않았다. 다시 말해 성주류화라는 성차별적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주류화 전략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남반구 여성학자들과 활동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세계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면서 반세계화운동에도 나서고 있는 DAWN은 2004년 웹사이트에 베이징 +10에서의 어떠한 협상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DAWN은 "경제적 보수주의, 부시 행정부의 군사주의, 근본주의의 경향의 악화라는 현재의 시점에서... 여성의 인권을 위해 기간 획득한 성과물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라면서 어렵게 얻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협상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확보된 권리를 유지시키는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 부당하게 배제되며 주변화되는 전세계 여성들이 연대하여 젠더 불평등의 구조를 밝혀내고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모색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는 보다 발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되새겨봄직 하다.

## 2. 성주류화 전략의 징후적 결과

성주류화 전략 평가를 단순히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전략만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주체적인 입장에서 여성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전망과 방향을 수립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는 위에서 한 바 있다. 오히려 여성운동 진영의 성주류화 전략이 현재의 여성운동을 어떻게 특징짓고 있으며, 여성운동의 역사적이며, 잠재적 급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분명한 평가가 요구된다고 보겠다. 본 글에서는 성주류화 전략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신자유주의적 재생산 위기에 대한 분석적 인식의 부재, 평등주의 전략의 한계, 급진성의 후퇴 및 탈정치화 등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며, 이를 호주제 철폐운동, 모성보호관련법안 개정운동, 공무원 및 비례대표 할당제 추진 등 구체적인 운동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호주제와 '가족의 위기'

2005년 3월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드디어 오랜 염원 끝에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참여정부는 여성친화적인 양성평등적인 정책의 구현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호주제 폐지가 예견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통과되리라 생각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 보수 세력의 반대가 극심했기에 더욱 놀라운 것이다. 하지만 호주제 폐지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무시할 수 없다고 해도, 출산율 저하에 대한 공격, 건강가족기본법이라는 가족 관련 제도의 도입, 최근 여성부의 여성 가족부로의 전환 등을 볼 때 결코 성공만을 자축할 일은 아닌 듯 싶다.

호주제는 베이징 +10 이행 평가 과제에서 한국적인 특성에 따른 '여성과 가족'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다<sup>8)</sup>. '여성과 가족' 항목은 가족지원정책과 평등가족정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가족지원정책에는 보육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여성노인지원 정책을, 평등가족정책에는 호주제 폐지에 관한 내용을 각각 평가하고 있었다. 여연은 "한국적 상황에서 여성운동은 가족정책을 주요 관심분야로 설정해 실천해 왔는데 다만 가족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보다는 문제대응식 방식으로 접근해온 한계가 있다. 지난 10년 간 영유아보육법 개정,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 추진, 여성 한부모 지원정책의 내실화 등 가족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정책을 수립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남윤인순, 2004)고 자평하고 있는데, 여연의 평가처럼 가족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이 부재했다는 평가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 포괄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한국 사회의 가족을 어떻게 진단하고, 소위 '가족의 위기' 담론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여성운동 진영내의 분석적인 관점과 입장이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다.

호주제 철폐 운동은 지난 몇 년간 여성운동 진영은 물론이거니와 여성부를 위시한 정부 여성정책에서도 일

- 7) 가족에 대한 위기담론은 국가와 자본에 의해 제기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가족의 위기'라는 표현은 전통가족의 해체를 두려워하는 이들의 문제의식에 기반한 용어이므로 따옴표처리한다.
- 8) 유엔에서 제시한 평가 분야는 A. 여성과 빈곤, B. 여성의 교육과 훈련 C. 여성과 건강, D. 여성에 대한 폭력, E. 여성과 무력 분쟁, F. 여성과 경제, G. 권력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 H.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I. 여성의 인권, J. 여성과 미디어, K. 여성과 환경, L. 여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에서는 인권과 여아의 내용이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통합시켰으며, 한국적 특성을 드러내는 분야로 '여성과 가족'을,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emerging issues)로 '장애인 여성', '이주 여성', '성적 소수자' 등을 평가안에 넣었다. 이에 대해 '여성과 가족' 부분의 평가를 수행한 여연대표는 "북경행동강령의 주요 관심분야에 가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여성을 가족과 연관짓기보다는 여성의 독자성에 근거해 주요과제를 도출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유교적 문화와 가치관이 지배하는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차별적인 가족제도 개선, 여성의존적인 가족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문제가 주요 관심분야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정책분야에 평등가족·열린가족 정책과 가족지원 정책이 포함되어야 여성의 온존한 독립적인 인격체로 직업생활과 가정 생활 등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가족법 등 가족제도 안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온존되어 있고, 여성의 일차적인 역할을 '가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에서도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가족의 문제를 제도적이거나, 관습적인 문화의 문제로만 한정시켰을 경우, 역사적인 여성 억압의 원인과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관되게 펼쳐 온 주요 과제였다. 여성운동진영은 호주제 철폐 운동을 펼치면서 남성을 중심으로 한 호주 승계제도가 놓는 성비 불균형이라는 인구학적 설득력과, 이혼 및 재혼 관계를 가진 가족 등 소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규정된 가족들의 피해 현황을 부각시킴으로서 동감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시켰다. 이러한 호주제 폐지운동은 부모성같이 쓰기 운동과 같은 대중적인 동력에 힘입어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둘러싼 불평등한 젠더 관계에 좌우 틀고 있는 ‘전통’이라는 가치의 폭력성을 문제삼고 상징적이며 실제적 차원의 여성 차별과 억압의 기저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으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족법제로서의 호주제에 대한 주목과 ‘양성평등한 가족’이라는 평등주의적 수사의 강조는 호주제 폐지 운동을 국가정책의 기본 단위로서 설정되어 있는 가족 제도 내에서의 여성 억압적 현실을 가족 내 성별 분업의 문제로만 한정시키고, 혁가족으로 이상화해온 근대 가족 형태 자체가 안고 있는 현재적인 모순과 위기 인식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오히려 여성운동 진영은 호주제 폐지를 가족의 해체로 연동시키는 보수주의 세력을 안심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호주제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가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이 붕괴된다’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가 곧 가족 해체로 이어진다면, 제2차 세계대전 후 호주제를 폐지한 일본이나 사회주의 혁명이 진행되면서 호주제나 가장권 등을 완전히 폐지한 중국 또는 아예 호주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서구는 현재 가족제도도 없고, 어른을 공경하는 풍속도 전혀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오늘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 가족에게 달라질 것이 무엇인가?”(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2)

그런데 호주제를 둘러싼 보수주의 세력의 반발(backlash)은 조선조의 상상력에 갇혀 있는 유림들뿐만이 아니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건강가족기본법’ 제정이나 ‘효행장려법’ 추진 움직임 등의 현상들은 여성운동 진영이 기존의 호주제 폐지 운동에서 보여주었던 담론이 어떠한 한계를 지니는지를 잘 보여준다. 바로 자본주의와 공생했던 근대적 가족의 형태를 발본적으로 문제삼지 않을뿐 아니라, 이를 후원하고 장려하는 국가를 상대로 오히려 양성평등만을 제도적으로 이루려 한데서 드러난 한계였다.

특히 건강가족기본법의 경우 출산력 저하, 노동력 재생산의 위기, 그리고 가족의 위기로 이어진 재생산 위기 담론에 대한 국가적 대응 방식이라 볼 수 있는데, 건강가족기본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성애에 기반한 결혼과 출산을 국민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고, 제31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 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혼 과정의 국가적 개입의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 또한 이 건강 가족기본법은 가족관련법의 상위법적 성격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 향후 가족 관련 법안의 규범 법제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법률이 출산율의 저하와 이혼율 급증이라는 상황에 대한 위기 타개책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4년 이 법에 제기 되었을 때 여성 단체들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가족정책을 보면 이중성을 느끼게 한다. 호주제도 폐지는 가부장제 가족구조를 해체하고 평등가족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건강가족기본법 제정에서 드러나듯이 가족의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전형적인 가족으로 복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다.”(한국여성단체연합a, 2004)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편에서는 호주제를 폐지하고도 다른 한편에서 여전히 건강가족기본법을 제정하는 이에 대한 비판을 묵살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이중적인 것으로 분리시켜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sup>9)</sup>이다. 이는 여성 노동력과 여성의 재생산로서의 기능에 부과하는 국가와 자본의 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발생한다. 주지하다시피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 이후 한국 사회의 가족의 위기는 한층 더 심각해졌다. 대량 실업과 그에 따른 빈곤화로 인하여 가정 폭력 등 가족 내 문제가 급증하게 되었다. 철회되어 가는 국가 서비스의 기능이 더욱더 여성의 무임금 노동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불안정 노동으로의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의 압박은 더욱 거세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현재 가

9) 한 좌담회에서 정현백 여연대표는 건강가족기본법의 제정을 “사회복지학회와 가정관리학회의 약합”에 의한 밥그릇 쟁기기로 규정하면서 이를 보수적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의 문제로 축소시켜 평가한 바 있는 이는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매우 일면적인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족의 위기를 관리하는 것은 ‘가사와 일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책 과제로 언명되었듯이 국가와 자본으로서는 당면한 과제일 수밖에 없으며, 성주류화 전략의 전반에 걸쳐 일관되어 있듯이 호주제 폐지라는 상징적 수준<sup>10)</sup>에서의 최소한의 젠더 불평등의 장애를 해소시켜준 것은 이러한 기조와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참여정부가 가족 가치관에 대한 철학과 관점을 분명히 갖고 국민적인 합의를 모아나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 해체되는 가족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족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각 부처에 추진되는 가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한국여성단체연합a, 2004) 수준에서의 평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주변화하는 정상가족이데올로기’, ‘이성애에 기반한 결혼 중심주의’라는 비판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기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과 공명하면서 가족의 예외적 형태를 가족 정책 차원에서 인정받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sup>11)</sup>

건강가족기본법, 출산을 저하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등에 대한 여성운동의 미온적인 대응은 지난 6월 여성가족부의 출범<sup>12)</sup>으로 결과지어졌다. 그동안 여성부에 대해 지지의 입장을 보여왔던 여성단체들도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비판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세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가족 내 돌봄 기능을 전적으로 여성이 떠맡고 있는 한국 사회의 구조를 비판하고, 바꾸고, 대안을 제시할 역할을 하리라 기대를 모았던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전환되는 것이 다시금 여성의 위치를 가족 내에서, 가족과 연동해서 배치하게 되는 맥락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명백히 후퇴라 여겨진다”고 지적했다.(여성웹저널 일다, 2005) 여성운동 내부의 의견 차이가 이해적으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여성운동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젠더 불평등 문제 해소에 관심을 더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주류화 접근이 갖는 한계, 즉 신자유주의적 국가의 정책을 밝혀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문제제기에 그친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sup>13)</sup>

## 2) 평등주의 전략과 노동권과 모성권을 둘러싼 계층적 분화

2001년부터 시행된 모성보호 관련법이 시행된 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신청률이 각각 36.2%(2002)에서 50.5%, 16.5%에서 20.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10) 현재 이 논의는 가족부나 개인별신분등록부나 하는 연장된 호주제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을 개인들 간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결합으로 제도화하려는, 조금 더 나아가려는 시도조차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11)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4. 3·8 여성대회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를 제공한 서울대 생명과학부 최재천 교수에게 여연 등 여성계가 공동시상하는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여했다는 점이다. 2003년 호주제의 근간이 되는 부계 혈통주의에 대한 과학자의 소견을 물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최재천 교수는 “인류 진화에 여성이 남성보다 기여하는 바가 크다. 전통적으로 남자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족보와는 달리 생물학적인 족보는 암컷 즉 여성의 혈통만을 기록한다”라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회 생물학적 견해를 법리적 판단의 자료로 요구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못할망정 이를 환영한 일은 부계혈통주의적 본질주의 사고를 비판하면서 젠더 불평등이 구조화되는 실체를 밝히려 노력하며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전개했던 여성운동 스스로의 성과를 후퇴시키는 것이었다.

12) 여성가족부가 2005년 6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여성가족부의 출범은 가족을 이대로 놓아둘 수 없다는 국가의 철학임이 배어있다. 자녀양육, 노인부양, 가족간호 등의 ‘돌봄노동’은 이제 가족내 문제로만 놓아둘 수 없다는 위기 의식에서 사회적 지원망을 꽂 필요성 속에서 등장한 것이다.

13) 이 글을 쓰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가족지원기본법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안은 가족지원법 제정공동대책위원회(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참여)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 전통적인 가족개념에 기반한 특정한 가족 형태의 기능의 유지 및 강화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공동체, 민법상 후견인이 있는 공동체, 미혼부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공동체 등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는 가족정책이 필요하다”고 새로운 법안의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기존의 혈연중심 ‘가족’의 개념을 탈피”하기 위해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책과 부양 및 양육노동의 사회화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건강가족기본법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가족관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제한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일 뿐이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의 대상이 ‘가족’을 기본단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가에 있어서 이 법안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여준다. 그러나 직종상으로는 관리직, 전문직의,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의 신청률(61.8%)이 높으며, 기존에 산전후휴가 실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모성보호관련법의 포함 대상이 정규직 여성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모성보호 관련법이 개정될 당시부터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었다.

모성보호 관련법이 개정될 당시 여성단체 중심의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연대회의에서 탈퇴하여 '개악 저지 운동'을 벌인 민주노총, 서울여성노조 등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개악 저지 세력은 이 개정안이 개악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그런데 양 세력의 논쟁은 여성의 모성권과 노동권의 양립에 대한 본원적인 논의의장을 열기보다는 '(과)보호'의 맥락에서만 공전함으로써, 결국 경영계와 정부에서 주장한 '어려운 경제적 현실 속에서의 비용' 문제라는 담론에 가려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당시의 논쟁은 운동 진영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적인데, 당시의 논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sup>14)</sup>, 여성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항의 존속이 여성 고용 기피의 원인이 될 뿐인 것인가, 아니면 여성에 대한 보호 조항 폐지는 남녀 노동자 모두의 노동조건 악화를 위한 수순일 뿐인가 하는 차이로 정리된다. 양 세력간의 이 입장 차이는 '여성보호'인가 '모성보호'인가라는 대당으로 불거졌는데 여성의 삶을 생애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성과 모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닐 뿐더러, 양 세력간의 핵심적인 입장 차이는 오히려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이 양립 가능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당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상호간의 주장의 내용을 따져본다면 양 세력 모두 모성권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노동권에 대해서만 평등주의와 보호주의로 나뉘고 있다. 그런데 연대회의나 개악저지 운동 모두 여성이 다음 세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은 대사회적인 일이고 보호조치가 당연하며, 사회적 분담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함으로써 모성의 사회적 역할의 강조와 그에 따른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 여성의 모성권과 노동권이 서로 배타적인 일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 여성의 노동과 모성의 현실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삼지 않았다.

반면 노동권에 대한 양세력간의 입장은 확실하게 대별된다. 연대회의는 노동현장에서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여성직무의 변화 등으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법정기준보다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듯이 여성 노동권에 대한 '과'보호조치는 남녀평등 기반 구축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주장했다. 개악저지 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의 모성권 쟁취투쟁은 노동법 전반적인 개악에 맞서 싸우는 과정의 연장선이며 따라서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평등한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여성보호조항을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조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개악저지 운동의 이 같은 반론은 장기적으로 여성 노동 인력에 대한 유연한 포섭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하에서 여성(노동자)들간의 계층 분화가 커져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

14) "정부와 자본이 모성보호조항 중 출산 휴가 연장과 근로기준법의 여성보호규정을 맞바꾸고 생리휴가는 노사정위원회로 넘겨 폐지하려는 노동법 개악 음모를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자본의 경제논리와 김대중 정부의 생색내기식 개혁 속에 회생되고 있다."("2001년 여성노동권 박탈 시나리오: 여성노동법 개악을 고발한다", 2001)

이는 서울여성노조 등 개악저지 운동이 모성보호관련 개정안을 반대하는 핵심적 이유이다. 즉, 연대회의 잔류 세력은 '모성보호'를 대가로 '여성보호'를 맞바꾸었다는 것이다.

환노위 대안법률안을 놓고 보인 입장차이의 핵심은 이전의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유해사업 사용금지 조항에서 '여자와 18세미만'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으로 축소했다는 것과, 제69조의 시간외근로조항에서 여성에 대한 시간외근로 제한규정이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악저지 운동은 이것이 포함적 모성보호의 후퇴라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연대회의는 환노위의 개정안이 연대회의 청원안보다 보호의 대상이 더 확대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8세 미만인자의 야업·휴일근로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며,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강화되었다... 또한 노동현장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여성직무의 변화 등으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법정기준보다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 인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고용 차별과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연장근로규제는 여성보호로 써가 아니라 남녀 모두의 장시간 노동을 규제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에게만 시간외근로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개악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연대회의, 2001)

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지점이다. 그렇지만 또한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이 놓여 있는 현실이 매우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조항으로 확대할 것'으로만 주장해서는 충분한 설득력을 발휘하기 힘들며, 이는 또다시 남성 노동자 모델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을 거칠게 정리하자면 보호입법과 그 이후 평등주의 전략을 둘러싼 역사적인 논쟁을 상기시킨다. 주지파다시피 노동과 모성이 대립적이 요소로 나타난 것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이다. 자본주의 내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의 권리를 결합하려는 본격적인 시도는 서구의 역사상 19세기 '보호입법(Protective Legislation)'에서 시작한다. 보호 입법은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 장시간 근로를 해야했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적인 바람을 담고 있지만, 어머니인 여성노동자 자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회의 생물학적 지속을 위한 수단이자 사회적 기능으로서 모성에 대한 관점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스웨덴식의 광범위한 사회복지체계를 건설하지 못했던 미국의 경우 보호입법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어, 2세대 이후 평등주의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주의 전략은 중산층 여성들이 주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계급적 한계와 임신을 질병과 같은 장애로 보는 등 남성중심적 사고 문제를 해소할 수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은 잠재적 모성을 지닌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남성노동자의 권리와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르지만 동등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인가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던져줌과 동시에 그러한 평등과 차이의 딜레마를 해소하지 않을 때,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은 영원히 서로 배타적인 범주로 계속해서 긴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성주류화 전략에 입각한 여성운동의 평가는 매우 분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근 모성보호는 임신·출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범위로 한정되어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 여성노동운동의 정리된 입장이다."(여연, 2004)라면서 "산전후 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분담화하였다...현행 모성보호제도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전사업종에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여성은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여연, 2004)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의 노동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모성권에 주는 합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적 인식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즉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부는 성별 노동분업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재생산의 일차적 책임자이자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초점에 두고 있다. 이미 신규 고용은 대다수 서비스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확대시키려는 고용의 내용 또한 가사 일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 구조조정 이후 여성의 불안정노동화와 더불어 진행되어온 여성 직종화와 성별분업이 재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주연·송강현주, 2003) 따라서 이러한 여성의 노동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고용의 활성화라는 기본의 욕구와 동일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활성화인가에 있어야 한다.

당시 논쟁 관련해서 해고된 전민주노총 여성국장이 "이번 법개정안은 여성과 남성의 근로조건을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정리된 여성관에 기초하고 있다. 크게 보아 환노위의 '대안 법률안' 역시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신자유주의와 연관이 없다. 오히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여성관이 지금도 타당한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이혜순, 2001)라고 불멘소리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시장의 변화와 그것의 젠더적 성격에 대한 분석이 결여된 평등주의 전략은 결국 여성들 내부의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무력할 수 밖에 없다.

### 3) 적극적 조치의 탈정치성

여성운동이 성주류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도화 방식으로 주요하게 제안한 것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치 및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과소대표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공무원 채용시 여성목표비율을 설정하거나, 국공립대학의 여교수 목표할당제를 실시하는 것, 정당법상 비례대표제 후보 명단에 일정한 여성비율을 할당시킬 것 등이 모두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1995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연에서 추천하고 후원한 후보들이 지방의회의 위원으로 당선된 이후 꾸준히 의회진출을 모색해온 여성운동 진영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같은 여성단체들과 연합하여 <여성할당제 도입을 위한 연대>를 만들어 적극적 조치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번 17대 총선에서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적극적 조치를 요구<sup>15)</sup>하였고, 각 당에서 비례대표 50%를 여성에 할당함으로써 13%의 여성의원 의회 진출이라는 자축할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여성운동 진영의 의회진출 관련하여 생물학적 여성성을 내세운 제도권 진출의 제한성과 신자유주의적 정치 개혁의 토크니즘으로 활용된 측면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논의할 것은 의회진출 자체라기보다는 할당제 등과 같은 이러한 적극적 조치를 통해 실현되는 여성의 공적 영역에의 진출과 대표성 제고가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적극적 조치가 여성운동에 의해 제기되어 도입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서구, 특히 미국에서는 민권 운동에 의해 활기된 인종 및 소수자 집단의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특정 집단에 대한 과거 차별의 보상적 성격의 것이던, 사회적 재분배의 논리든 간에 적극적 조치는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을 골간으로 짜여진 자유주의의 여러 제도 및 이념과 상충되기 때문에 '권리'의 개념으로 구조화되기가 매우 어렵고, 따라서 역차별 공세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의 모순은 이미 한국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1996년부터 2002까지 시행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 2003년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되어 실시되고 있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의 경우 5급, 7급, 9급 공무원의 20-30%를 여성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라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 혹은 남성 어느 한쪽의 성이 30% 이상을 넘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sup>16)</sup> 이 채용목표제는 초중등 교원채용에서 처음 적용되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여성비율이 90% 이상이 넘는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한다.

즉, 전통적으로 여성이 배제되어왔던 공직과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 진출을 향상시키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적극적 조치는 성비균형이라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의 개념으로 축소되면서 결국은 젠더 정치의 급진성을 탈각시킨다. 이는 제도나 정책 수립의 전 과정에 내밀한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적극적 조치 자체로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를 중립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 준다. 즉, 평등과 젠더 개념이 정책원리로 포섭되는 과정에서 제도 그 자체의 성차별적 본성을 인식하는데 실패한다면 젠더의 변혁정치로서의 가능성을 탈색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김경희·신현우 2004. Currie 재인용)

또한 적극적 조치는 여성에 대한 역사적인 차별과 배제를 매우 협소한 의미의 평등 개념으로 환원시킴으로서 집단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화, 원자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때에 더욱 문제인 것은 적극적 조치가 집단정체성(group identity)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적극적 조치는 불리한 대우를 받아온 집단, 소수자(minority)를 어떻게 정의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가 자체가 문제가 된다. 미국의 경우 적극적 조치는 혼인과 소수민족에게 먼저 적용되었으며 여성들은 나중에 포함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받은 차별이나 불리함(disadvantage)이 과연 유색인종이 겪은 것과 같은가하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황정미, 2002) 또한 오늘날과 같이 여성들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여성을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적극적 조치의 진정한 의미가 살려면 결국 가장 차별받는 여성들의 문제를 정치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사실상 현재의 적극적 조치에 의한 여성세력화는 여성의 억압과 차별 해소를 몇몇 제한된 계층과 계급의 여성들의 진출로 해소하는 방식으로 탈정치화시키거나, 여성 배당량으로 여성의 입지를 더욱

15) "1. [각 정당에 바란다] 각 정당은 17대 회기동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모든 적극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여성정치참여의 제도적 틀을 완성해야 한다."(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총선여성연대는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선출직과 1:2 비율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 할당을 의무조항화 할 것을 주장했다.

16) 정부에서 행정학회의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한 이유는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 비교할 때 여성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더 중요하게는 남성들의 역차별 공세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축소시키고 그 내에서 여성들 간의 진입 경쟁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여성 내부의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원수가 많아지는 것만으로 가부장적 법, 제도가 변화하는 것이 아님은 이미 세계 각국의 여성 정치세력화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성들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는 온갖 통념과 태도들, 남성중심적인 정치 문화는 변화시키지 않은 채, 엘리트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 수를 늘린다고 해서 여성의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뿐더러 다수의 여성들의 지지 없는 엘리트 여성정치인들 만의 힘으로 기존 남성지배적인 정치구조를 개선하기는 힘든 일이다. 결국 적극적 조치가 유급노동시장이나 제도 정치의 대표성에 접근하는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양적 성과에만 집착할 때, 성주류화는 여성적 차이를 간과한 채 남성적 (노동)모델에 동화시키는 모순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sup>17)</sup>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 조치의 긍정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적극적 조치가 제기되었던 정치적 급진성이 정책적 프로세스 안에 갇히는 순간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다른 방식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일 뿐이라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뛰어넘는 정치적 상상력의 확대를 꾀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가 제도와의 타협과 협상을 통한 혁법만을 강화할 경우 여성 운동의 급진성은 탈각되며, 그 경우 제도 영역 내에서의 성과를 유지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세력화(empowering)는 점차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III.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아래로부터의 국제연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연대를 통한 성주류화 전략이 한국 여성운동에서 안착화하는 과정은 여성들 간의 차이를 무화시켜왔고 소외계층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제 바야흐로 세계화시대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의한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국제연대는 중요한 운동의 방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시애틀에서, 제노아에서 운동들의 국제연대는 전세계 민중의 삶을 수탈하는 신자유주의의 공세를 한풀 꺾어 놓는데 일조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운동의 국제연대는 주로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오며, 제3세계 국가의 여성들 그리고 각 나라의 기층여성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전체 여성을 하나의 범주로 놓고 ‘여성의 주류화’를 추진해온 과정을 통해 여성들 간의 계층·계급적 간극이 벌여왔다.

여성연합은 베이징+10에 대한 평가에서 제도화를 통한 성주류화 운동에 집중해 온 것이 어떤 지점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남겼는지에 대해, “현재 한국여성운동은 2005년 호주제 폐지를 계기로, 지난 20여 년 동안 여성운동의 치열한 노력의 결과 이루어진 법과 제도상의 평등(de jure equality)이 실질상의 평등(de facto equality)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이에 기반한 여성운동의 전망 찾기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하고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현상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초래하고 있는 ‘비정규의 여성화(Feminization of Informal Sector)’라는 구조적인 여성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여성운동의 대응을 강화하고, 또 사회양극화를 양산하는 ‘경제구조의 전환(Transformation of Economic Structure)’을 어떻게 실체화 시켜나갈 것인가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조영숙, “Beijing+10과 MDGs+5”에서, 2004)고 날카롭게 짚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여성 빈곤화와 신보수주의적 여성의 모보수 보호노동 의존적인 가족정책 강화이라는 양날의 칼에 대해서 여성의 돌봄 노동과 보살핌 노동을 어떻게 사회적 가치로 환원할 것인가와 성평등한 가족정책과 보육정책의 마련 등 제도화로 환원되며, 신자유주

17) 이와 관련하여 할당제나 적극적 조치와는 다른 개념으로 프랑스의 parité(남녀동수정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9년 12월에 통과된 법률에 따라 지역 선거에서 각 정당은 입후보자 명단을 남녀 동수로 하되, 전체 입후보자를 6명 단위로 끊어서 각 단위에 남녀가 동수로 섞여야 한다. 이를 50% 할당제와 유사하게 볼 수 있으나, 프랑스에서 50%를 배당하는 것은 단순히 집단적인 과거의 차별을 보상한다거나 재분배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인류를 남성 젠더와 동일시해왔던 남성중심주의를 넘어서 성적 차이에 입각하여 인류를 구성하는 여성 50%의 당연한 권리로 선언하는 것이었다.

의에 저항함으로써 정부와 자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있었던 베이징+10회의에서는 제5차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2차대전 이후 전세계의 힘의 균형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쳐왔던 UN의 힘이 약화되고 경제적 힘을 등에 엎고 신자유주의를 세계화의 중요한 이념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의 결과이다. 새로운 여성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북경여성행동강령을 만들기는커녕, 여성에 대한 특히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정부로 인해 북경여성행동강령에서 합의된 수준조차 하향화 될 수 있다<sup>18)</sup>는 우려가 만연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각국과 NGO들이 스스로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정부의 보수적 공세로부터 그간의 성과를 방어하기 위해 각국은 문서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기로 사전에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선진국 주도의 국제연대, 즉 세계여성회의와 같은 구조를 통한 국제적 공조는 힘의 불균형에 의해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베이징+10회의에서 성과를 지키려한 여성운동들의 노력은 가상한 것이나, 이렇게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적임을 보여준다. 국제연대운동이 UN의 각종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로비와 협상전략, 이를 통해 합의된 내용의 국내의 정책적 도입만으로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여성과 빈곤'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강남식(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장, 성공대회 교수)은 "여성빈곤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여성 비정규직화의 가속화와 실업 증가, 사회보장제도 미비, 평등가족정책의 부재 때문"이라면서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가 외환위기 이전 40.3%에서 이후 43.8%로 늘어나는 등 최근의 '신 빈곤층 문제'의 핵심이 여성빈곤에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부재로 신빈곤층 여성들은 동반자살 등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거나 매매혼·강제 성매매자로 전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운동단체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적인 반세계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성연합 등 여성단체들의 움직임은 장외투쟁을 통해 여성들을 조직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전해지도록 노력하는 방향보다는 정책적 대안 마련에 급급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 또한 엘리트 여성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법제화되는 과정만을 밟아간다면, 이는 다시금 기간의 여성운동의 '성주류화' 운동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여성들은 새로운 사고와 운동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왜 우리는 세계여성행진에 주목하는가?

1995년 UN의 북경여성대회에서 퀘벡여성연맹이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 투쟁하는 국제적인 여성행진을 제안하는 것에서 세계여성행진이 시작되었다. 세계여성행진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995년 퀘벡여성연합에서 제안해 퀘벡에서 열린 적이 있는 '빈곤 반대 여성행진'의 경험이 뿌리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 이 행사는 세 개의 조로 나뉜 850명의 여성들이 경제, 사회적 정의 등 아홉 개의 요구사항을 쟁취하기 위해 열흘 동안 행진을 벌였고 행진이 막바지에 이를 즈음에는 1만5000명의 여성들이 결집해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과 빈곤, 그리고 차별에 항의하는 '유쾌한' 시위를 벌였다. 당시 남반구 출신 여성은 20명밖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북반구와 남반구를 가릴 수 없는 여성들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자신감을 주었다.

이 제안은 1998년 <여성의 세계적 요구들을 위한 지침서>라는 요구 강령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 2000년 세계여성행진을 조직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세계여성행진은 퀘벡여성연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세계여성행진이 조직되는 과정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여성들에게 가하는 폭력과 생존의 위협이라는 정세적인 조건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세계 여성들이 2000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세계 거리를 누비는 '세계여성행진2000'을 벌이겠다고 선포한 배경에는 세계화에 포함된 반여성성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신자유주의자

18) 실제로 이 회의에서 미국은 북경여성행동강령을 재확인하기로 한 잠정적 합의내용을 일방적으로 깨면서 여성에게 보장된 '낙태의 권리'를 행동강령 조항에서 삭제하는 새로운 안건을 회의석상에 상정하여 국제적 비난을 한 몸에 받았으며 동시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한다.

들의 말처럼 ‘풍요로워진 지구’에서 노동·교육·주거·출산·낙태의 권리 등 가장 기초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각국 여성들의 저항이 전보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야말로, 이들의 말이 거짓이며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태생적인 모순이라는 것이 1년에 걸쳐 이 행진을 준비한 여성들의 주장이었다. 한편 1980년대 외채위기 이후 더욱 성장한 제3세계 여성들의 투쟁과 운동의 존재, 자유주의 폐미니즘과 급진주의 폐미니즘에 제기하는 여성문제를 뛰어넘는 여성의 현실 등이 여성운동 앞에 놓여지며 세계여성행진이 시작되었다.

세계여성행진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지구적 경제체제와 가부장제라는 사회정치적 체제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빈곤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즉, 가부장제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갖지만 우리가 지금 직면한 형태의 가부장제는 자본의 세계화로 더욱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체제는 상호 작용을 통해 더욱 강화하면서 여성의 경제적 주변화, 문화적 열등함, 여성 육체의 시장화와 상품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질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세계여성행진은 여성의 ‘빈곤과 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 체제가 초래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조직화하고 있다. 2000년 세계여성행진은 157개국 2천여 개 여성단체들이 참가하여 나라별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저마다의 방식을 통해 제기한 것을 바탕으로 각국 대표단이 뉴욕에 결집해서 유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 앞에서 이 기구들이 여성들에게 취하는 약탈적인 정책을 고발하고 여성들의 요구를 전달하였다. 세계여성행진이 내놓을 ‘요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하든 이것을 국제기구에 보냄으로써 다소 제도적 대응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여성행진은 160개국 6,0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그 내의 입장과 지향이 다양하며, 이러한 대응은 세계여성행진의 하나의 흐름일 뿐이다. 또한 세계여성행진은 2001년 세계사회포럼을 기점으로 저항의 방식을 장외투쟁의 방향으로 보다 강고히 가져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세계여성행진에 주목할 만한 이유는 ①세계여성행진이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지구적 투쟁에서 여성운동으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사회포럼의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은 여성이며, 그들은 노동자이자 여성, 실업자이자 여성, 농민이자 여성으로서 세계화를 반대하고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현재는 독자적으로 전세계를 돌아 여성들의 투쟁의지와 변혁에의 요구를 모아낸다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장외투쟁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여성행진은 ②다양한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도 운동 내 차별과 배제에 끊임없이 투쟁을 한다. 세계여성행진은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운동을 평가하거나 조망하는 모든 세미나 자리에 발제자로 참석해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운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전략을 내세우는데 적극적으로 결합했으며, 세계여성행진의 촉구로 인해 각 세미나 주최측들은 최소한 발제자의 남녀비율을 맞추는 데에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계여성행진이 반세계화 운동 내 성주류화를 넘어, 운동의 내용으로서 여성의 해방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세계여성행진의 요구 강령은 자본의 위기극복 전략인 금융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여성의 독자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의식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다른 여성운동의 국제연대 운동과 차별성이 있다.

“포르투알레그레에서 끝난 3차 세계사회포럼은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여 이윤이 아니라 인간을 우선시하고,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여 평화를 건설하는 저항과 대안을 일상 속에서 창조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강화한다. 또한 우리는 포르투알레그레에 참가한 다른 사회운동들과의 연대 속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신한다. 이 때문에 세계여성행진은 사회운동국제네트워크에 참가하기로 결정한다. 우리는 이 네트워크가 평등을 위한 투쟁을 포함하는 것이 사회운동들 전체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고, ‘또 다른 세계’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함—이는 새로운 종류의 행동을 발명하고 모든 형태의 억압이 소멸하는 말본적 유토피아를 구상해야 함을 뜻한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세계여성행진, <2003 세계사회포럼: 여성의 관점에서 본 평가> 중에서<sup>19)</sup>

세계여성행진의 세계사회포럼 평가서는 여성운동이 다른 사회운동들과의 연대 속에서 전반적인 사회운동들

19) 윤소영, 「세계사회포럼 호소문」,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대안세계화 운동」 중에서 인용

과 함께 가는 여성운동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세계여성행진은 세계사회포럼을 그 출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결합해왔으며, 이제 새롭게 형성된 사회운동국제네트워크에도 기꺼이 참가했다. 또한 세계여성행진은 이 새로운 네트워크가 여성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의 제를 끼워넣기식이 아니라 발본적인 젠더정치의 요구로 갈 가능성성을 여전히 담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여성행진의 가장 중요하게 주목할 지점은 UN을 기점으로 한 여성들의 국제연대가 성주류화라는 전략을 통해 상층여성, 제1세계 여성의 삶의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에 비해, 국경과 문화를 가로지르는 행진의 형태에서 ③'상층 중심' 내지는 '국제회의 중심'의 국제연대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연대와 투쟁을 지향하고 실천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새로운 국제주의 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류를 위한 세계현장'은 세계여성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 여성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세계의 상과 옹호할 가치들을 담고 있다. 이것은 각 나라에서 비록 아직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못한 현실이지만 현실 여성들의 삶을 기반으로 그들의 진정한 요구와 권리를 제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국제연대 운동의 흐름으로 자리잡아갈 것이다.

시장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여성의 삶에 부과한 부정적이고 악랄한 효과들은 결코 이들의 첨병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 개별 국민 국가의 정부에 기대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성운동은 다시 한번 발본적으로 상기해야 할 것이다. DAWN의 의견처럼 협상자체를 거부하는 전략, 다시 말해 세계화 반대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야 말로 요구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히 새로운 세계를 여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저항하는 첫걸음을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내딛며보는 것도 의미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강남식(2001), "성주류화 정책과 생산적 복지", <여성과 사회> 제 12호.
- 권현정(2002), "젠더 주류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차별'과 '우대'를 넘어서-젠더 주류화와 여성정책>, 서울대 여성연구소·여교수회 공동심포지엄 자료집
- 김경희(1999), 국가페미니즘의 가능성과 한계, 비판사회학 대회 발표문.
- 김경희(2002), 정부와 여성운동의 여성정책 의미를 분석, 한양대 여성연구소 개소 기념 심포지움.
- 김경희·신현옥(2004), "정책과정을 통해 본 한국의 국가와 폐미니즘",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은실(1996), 시민사회와 여성운동, 학술단체협의회 발표문.
- 김현정(2000), 여성운동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 남윤주(1994), 여성과 국가이론, 「여성과 사회」 제5호, 한국여성연구회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준)(2003), "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 「진보평론」 제17호.
- 서미라(2002),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와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영주(2001),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여성과 사회」 제12호.
- 심영희(1998), "여성운동의 차원: 한국 폐미니즘의 상황과 양성평등을 위한 모색",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님.
- 원영수(2003), "반세계화운동의 흐름과 전망", 「진보평론」 제17호.
- 이박혜경(2001), "여성(주의), '진보'를 묻는다", 「여성과 사회」 제12호.
- 이혜순(2001),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운동을 돌아본다', 「노동사회」 57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정주연·송강현주(2003), "DJ·노무현, 신자유주의 전략과 여성정책의 함수관계", 2003년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전략과 여성 -빈곤과 차별의 확산.

조순경 · 김혜숙(1995), 「‘진보적’ 운동권의 뿌리깊은 성차별」, 월간 「사회평론 길」, 8월호.

조주현(2000), “여성정체성의 정치학 : 80-90년대 한국의 여성 운동을 중심으로”,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또하나의 문화.

조영숙(2004), “Beijing+10 기념 제4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를 다녀와서: 미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역풍 (Backlash)에 맞서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 한국여성단체연합 뉴스매거진 women21.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2), <우리 평등하게 살래?!>,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1997), 「민주여성」(합본호 1987년-1995년), 한국여성단체연합.

\_\_\_\_\_ (1998), 「열린희망: 한국여성단체연합10년사」,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_\_\_\_\_ (2004)a, <노무현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및 정책 제언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_\_\_\_\_ (2004)b, <한국의 여성정책 10년-돌아보며 내다보며>, Beijing+10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2004), <‘건강가정’ 있다/없다>, 건강가정기본법 진단 토론회

황정미(2002),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와 여성의 시민권”, <‘차별’과 ‘우대’를 넘어서-젠더 주류화와 여성정책>, 서울대 여성연구소 · 여교수회 공동심포지엄 자료집

#### <참고 웹사이트>

일다, <http://www.ildaro.com>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en21.or.kr>

CAW, Committee for Asian Women, <http://caw.jinbo.net>

DAWN, 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Women for a New Era, <http://www.dawn.org.fj>

WEDO, Woemn's Environment & Development Organization, <http://www.wedo.org>